

#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2082
----------	------

2020. 12. 18  
도시계획관리위원장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- 황인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875번 「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과 김경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959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,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역세권청년주택 민간임대분의 임대료가 공공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입주 대상인 청년계층에게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고, 서울시는 최대 보증금의 50%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으나 역세권청년주택 청년형의 평균 보증금은 약 6천만원으로, 청년들의 자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은 실정임.
- 따라서 역세권청년주택 보증금의 지원비율을 현행 50%에서 60%로 상향 조정함으로써,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역세권청년주택의 정책적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.

- 아울러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의 실행력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2016.2.3.)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,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#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- 보증금 지원이 가능한 역세권청년주택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비율 상한을 현행 50%에서 60%로 조정함. (안 제9조제2항)
-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정(2016. 2. 3.)에 따라 근거 법령 명칭을 변경함. (안 제14조제1항, 안 제15조제2항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공급에 관하여 필요한” 을 “공급에 관한” 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본문 중 “지원할”을 “지원하되, 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이내에서 지원할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4조제1항제7호 중 “「학교보건법」” 을 “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” 로 한다.

제15조제2항제11호 중 “「학교보건법」” 을 “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” 로 하고, “시·도학교보건위원회” 를 “시·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” 로 한다.

제21조의 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” 을 “시행에 필요한” 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(대안)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3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<u>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</u>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급에 관한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9조(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) ① (생략) ② 시장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보증금(계약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월세를 미리 납부한 금액인 선납월세를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을 100분의 30 이내에서 <u>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까지 지원하되, 최대 4,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9조(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원하되, 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이내에서 지원할</u> ----. &lt;단서 삭제&gt;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조(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법 제33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6조제</p>	<p>제14조(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----- -----</p>



③ ~ ⑥ (생략)

제2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  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 
으로 정할 수 있다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시행규칙) -----  
시행에 필요한-----  
-----.